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 등〉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648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 등(안 제10조의2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7.

다.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혈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Ⅲ. 검토의견

1.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 등(안 제1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 <u>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u>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 제2항)	○ <u>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u> <u>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보고할 수 있음</u> (안 제10조의2 제1항) ○ <u>중앙관서의 장은 위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 제외)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u> (안 제10조의2 제2항) ○ <u>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u> (안 제10조의2 제3항)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2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26조 제2항)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¹⁾.

1)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금지하고, 다만 ①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교환·양여를 허용하고 있음²⁾.

반면 일반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며³⁾, 매각·교환·양여 등 처분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유재산의 처분 계획은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회에 보고되고 있으나⁴⁾ 실제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국회에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국유재산 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4)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에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26.2.19. 개정, '26.8.20. 시행)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음⁵⁾. 다만 이는 이미 처분이 완료된 뒤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국유재산 매각을 국회에서 사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원칙으로 ①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②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③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④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⁶⁾.

그런데 최근 국유재산 매각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이 매각예정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5)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021년~2025년 매각가격 1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 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매각건수		매각가격/매각예정가격					
		예정가격 300억원 이상	100% 이상	100% ~90%	90% ~80%	80% ~70%	70% ~60%	60% 미만
2021	1,506	8	1471	7	12	11	1	4
2022	1,570	10	1546	1	11	7	1	4
2023	2,160	6	2017	31	30	36	27	19
2024	2,299	5	2066	44	44	44	43	58
2025	1,680	10	1456	39	50	37	41	57

자료: 재정경제부

이에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 처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가 사라지게 되는데, 국회에 사전 보고되는 매각 계획과 실제 매각 실적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보고 대상인 매각에 대해서도 실제 매각 후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25.12.15.)’과 일치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양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양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중양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은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양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23명-----. ③ ~ ⑤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60